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11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2.

발 의 자:도종환·임오경·유정주

이규민・안민석・최종윤

최혜영 · 김남국 · 정청래

홍정민 · 이병훈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19로 경정·경륜 경기가 장기 휴장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, 선수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. 이와 더불어 올해 불법 경륜·경정 사이트가 1천여 건 신고 접수되는 등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.

이에 경륜·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 화에 대비하고자 함. 아울러 온라인 발매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시 장 확산을 방지하고 경륜·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체 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아울러 승자투표권 발매계획과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매출총량 준수방안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

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체육진흥투표권 제재 수준과 동일한 벌금형 병과 명시로 상향시켜 불법 온라인 경륜·경정 사업을 근절하고자 함(안 제9조제3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경륜・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륜·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발매"를 "발매[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한다)을 통한 발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"로, "표"를 "표(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계획 및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」 제5조에 따른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기준 준수방안을 제 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제3항제2호 중 "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"을 "정보통신망을"로 한다.

제28조 중 "제26조제1항"을 "제26조제1항, 제27조제3호·제4호 및 제3 4조제1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"승자투표권"이란 경륜 또는 📗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 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 -----발매[「정 는 승자투표 방법・선수번호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말한다.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 한 발매를 포함한다. 이하 같 -----표(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)-----. 4. ~ 6. (생략) 4. ~ 6. (현행과 같음) 제9조(승자투표권의 발매) ①・② │제9조(승자투표권의 발매) ①・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 표권을 발매하는 경우 승자투 표권 발매계획 및 「사행산업

③ (생략)

제24조(유사행위 등의 금지) ① • 저

- ② (생략)
-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(생략)
- 2.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<u>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정보통신망을</u>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·제작·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. (생략)
- 제28조(벌금의 병과) <u>제26조제1항</u> 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통합감독위원회법」	제5조에
따른 매출액 규모	등에 관한
총량기준 준수방안을	제4조제2
항에 따른 경주개최	리계획서에
포함하여 문화체육된	<u></u> 관광부장관
의 승인을 받아야 한	<u>다.</u>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-	음)
세24조(유사행위 등의	금지) ① •
② (현행과 같음)	
③	
1. (현행과 같음)	
2	
<u>정보통신망</u> 을	<u></u>

3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벌금의 병과) <u>제26조제1</u> 항, 제27조제3호·제4호 및 제3 4조제1호-----